

#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497
----------	------

2026년 3월 5일  
환경수자원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년 2월 9일, 김규남 의원 외 21명

나. 회부일자: 2026년 2월 12일

다. 상정일자: 제33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 
(2026년 3월 5일 상정, 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김규남 의원]

#### 가. 제안이유

-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, 특히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 장례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
- 서울시민의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」에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, 예절, 교육 및 정보제공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이를 통해 반려동물 생명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골자

- 1) 반려동물 ‘장례문화’를 정의함(안 제2조제17호 신설).
- 2) ‘반려동물장묘시설’을 ‘공설동물장묘시설’로 용어를 수정함(안 제30조제1항).
- 3)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, 정보 제공, 교육·홍보 등 반려동물 장례문화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30조제4항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동물보호법」 등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「동물보호법」 제71조(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)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는 동 조례 제30조에 ‘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 장묘·장례에 관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.
-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“장례문화”를 정의하고 “반려동물장묘시설”을 법적 용어인 “공설동물장묘시설”로 변경하며, 장묘시설의 이용과 정보제공, 교육·홍보 등의 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 및 생명 존중 문화를 함양하는 측면에서 이견 없음.
- 한편, 서울시는 동 조례 제25조와 제25조의2를 통해 사회적 약자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를 대상으로 지난 2024년부터 반려동물 장례비를 마리당 15만원씩 지원<sup>1)</sup>해 오고 있음.

---

1) '25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 계획(동물보호과-5829호(2025.3.21.))

-지원범위: 영습, 추모예식, 화장 및 수·분골, 봉안 및 인도(기본유골함 제공),

-소요예산: 750만원 ※반려동물 장례비(마리당 평균)는 약 38~45만원 수준.

서울시 보도자료(2025.4.1.), “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장례 부담 덜어드려요”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##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“장례문화”란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, 의식, 절차 등을 포함하는 문화를 말한다.

제7조의5제4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25조제4항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30조의 제목“(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)”을“(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법 제71조”를 “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71조”로, “반려동물장묘시설이 설치·운영 될”을 “동물을 위한 장묘시설(이하 “공설동물장묘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 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반려동물장묘시설”을 각각 “공설동물 장묘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, 정보 제공,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16. (생 략)</p> <p><u>〈신 설〉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1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7. “장례문화”란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, 의식, 절차 등을 포함하는 문화를 말한다.</u></p>
<p>제7조의5(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한 위원에게는 「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」에 따라 예산의 <u>범위</u> 안에서 수당·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⑤ (생 략)</p>	<p>제7조의5(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5조(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봉사동물로서 은퇴한 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<u>범위</u>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25조(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----- -----.</p>
<p>제30조(<u>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</u>) ① 시장은 법 제71조에 따른</p>	<p>제30조(<u>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</u>) ① ---- <u>성숙한 반려동물 장례</u></p>

반려동물장묘시설이 설치·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이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.

<신 설>

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71조---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(이하 “공설동물장묘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-----.

② -----  
-- 공설동물장묘시설-----  
-----.

③ ----- 공설동물장묘시설-----  
-----.

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, 정보 제공,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